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2022. 10. 13. ~ 10. 16. 영광스포티움

신청안내 및 부스안내

신청 안내

신청 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각종 신청서양식 1부(디렉토리 신청서 필수)	
접 수 처	이메일 : emobilityexpo.booth@gmail.com	FAX : (061)350-3454
부스비 계좌 번호	계 좌 : (농협) 301-0303-7110-51	예금주: 영광군청

부스 안내

구 분	기본 부스	독립부스
제공 면적	9㎡(3mx3m)	9㎡(3mx3m)
조기신청 할인 가격 [8월15일 까지]	30만원	10만원
기본 가격	50만원	20만원
제공 내역 (최대 150부스)	옥타늄부스, 상호간판, 조명4개, 전기공사 1kw이상, 콘센트1개(220V, 2구) 안내데스크1개, 부스번호 비표	세부사항 추후 안내
	(예시)  *기본부스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전시회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엑스포에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계약을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2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공동주최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최자가 제작한 소정의 참가신청계약을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계약을 2022년 8월 31일(수) 까지 제출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다만 참가신청계약을 제출했으나 주최자가 박람회의 원활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와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에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 및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4.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제공하며, 참가신청계약서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접수 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질 및 분류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참가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4. 참가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 하여야 한다.
6. 참가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해약

1. 참가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시, 이미 납입한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부대비용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입

1. 참가자는 배정된 전시면적과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장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규정시간외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참가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은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충 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참가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장내에서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